

1. 개정이유

상위 법률 개정으로 전동보장구충전시설 비치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구체적인 대상시설을 정하고, 휠체어 이용자의 장례식장 빈소 출입을 위한 휴대용 경사로 비치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동보장구충전시설 비치 의무를 가지는 대상시설 범위를 구체화함.
나. 휠체어 이용자의 장례식장 빈소 출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휴대용 경사로 비치 의무를 부여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쇼핑카트”를 “쇼핑카트, 전동보장구충전시설”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를 신설한다.

별표3을 다음과 같이 한다.

휠체어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제6조 관련)

대상시설		비치용품	
		의무용품	권장용품
제1종근린생활시설	읍·면·동사무소	점자업무안내책자, 8배율이상의 확대경, 공중팩스기 및 보청기기, 전동보장구충전시설	편의시설안내지도

	우체국, 전신전화국	8배율이상의 확대경, 공중팩스기 및 보청 기기	점자업무안내책자
	공공도서관	보청기기	저시력용 독서기, 전 동보장구충전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관람장	보청기기	점자공연안내책자
	전시장, 동·식물원		휠체어 및 점자전시 안내책자
판매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 곱미터 이상인 도·소매점		음성계산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대 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 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 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	장애인용 쇼핑카트	전동보장구충전시설
교육연구시설	도서관	저시력용 독서기, 음 성지원컴퓨터 및 보 청기기	점자프린터, 컴퓨터 (정보통신보조기기 를 포함한다), 전동 보장구충전시설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 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 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점자업무안내책자 (시·군·구청에 한 한다), 휠체어, 8배 율 이상의 확대경, 공중팩스기 및 보청 기기	점자업무안내책자, 편의시설안내지도, 컴퓨터(정보통신보 조기기를 포함한 다), 전동보장구충 전시설
노유자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 지시설		전동보장구충전시설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점자관광안내책자
장례식장		입식 식탁, 휴대용 경사로	
운동시설	수영장	입수용 휠체어	

비고

1. 비치용품은 출입구부근, 민원실, 안내실, 매표소 등 장애인등이 이용하기 편리

한 곳에 각각 비치하여야 하며, 공중팩스기는 사무용 팩스기로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보청기기“는 보청기, 조청기 또는 강연청취용보조기 등을 말한다.
3. 장애인용 쇼핑카트는 최소 3개 이상을 쇼핑카트 보관장소 등에 비치하고, 장애인용 쇼핑카트가 비치되어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4. 장례식장(병원, 화장시설 내 장례식장 포함) 빈소의 바닥면에 높이 차이가 있고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휴대용 경사로를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 장례식장 란 및 비고 4.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한다.

1. ~ 3.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신청서를 받은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청인이 재외동포나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신청서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와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

국가보훈부장관에게 ----.

1. ~ 3. (현행과 같음)

② -----

---- 국가보훈부장관-----

-----.

③ -----

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조의3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휠체어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제6조 관련)

대상시설		비치용품	
		의무용품	권장용품
제1종근	읍·면·동사무소	점자업무 안내책자, 8배율이 상의 확대	편의시설 안내지도

-----.

----- 국가보훈부장관이 ----- 국가보훈부장관에게 -----
-----.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의2(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 및 별표3에 따른 비치용품의 종류등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휠체어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제6조 관련)

대상시설		비치용품	
		의무용품	권장용품
제1종근	읍·면·동사무소	점자업무 안내책자, 8배율이 상의 확대	편의시설 안내지도

린 생 활 시 설		경, 공중 팩스기 및 보청기기, <신 설>	
	우체국, 전신 전화국	8배율이 상의 확대 경, 공중 팩스기 및 보청기기	점자업무 안내책자
	공공도서관	보청기기	저시력용 독서기, <신 설>
문 화 및 집 회 시 설	공연장, 관람 장	보청기기	점자공연 안내책자
	전시장, 동 · 식물원		휠체어 및 점자 전시안내 책자
판 매 시 설	바닥면적의 합 계가 1천제곱 미터 이상인 도 · 소매점		음성계산 기
	「유통산업발 전법」에 따 른 대규모점 포 중 대형마 트(대규모점 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 형마트의 요 건을 갖춘 점 포를 포함하 다)	장애인용 쇼핑카트	<신 설>
린 생 활 시 설		경, 공중 팩스기 및 보청기기, 전동보장 구충전시 설	
	우체국, 전신 전화국	8배율이 상의 확대 경, 공중 팩스기 및 보청기기	점자업무 안내책자
	공공도서관	보청기기	저시력용 독서기, 전동보장 구충전시 설
문 화 및 집 회 시 설	공연장, 관람 장	보청기기	점자공연 안내책자
	전시장, 동 · 식물원		휠체어 및 점자 전시안내 책자
판 매 시 설	바닥면적의 합 계가 1천제곱 미터 이상인 도 · 소매점		음성계산 기
	「유통산업발 전법」에 따 른 대규모점 포 중 대형마 트(대규모점 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	장애인용 쇼핑카트	전동보장 구충전시 설

교육연구시설	도서관	저시력용 독서기, 음성지원 컴퓨터 및 보청기기	점자프린터, 컴퓨터(정보통신보조기기를 포함한다), <신설>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점자업무안내책자(시·군·구청에 한한다), 휠체어, 8배율 이상의 확대경, 공중팩스기 및 보청기기	점자업무안내책자, 편의시설안내지도, 컴퓨터(정보통신보조기기를 포함한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점자관광안내책자
	장례식장	입식 식탁, <신설>	
운동	수영장	입수용 휠체어	

	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		
교육연구시설	도서관	저시력용 독서기, 음성지원 컴퓨터 및 보청기기	점자프린터, 컴퓨터(정보통신보조기기를 포함한다), <u>전동보장구충전시설</u>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점자업무안내책자(시·군·구청에 한한다), 휠체어, 8배율 이상의 확대경, 공중팩스기 및 보청기기	점자업무안내책자, 편의시설안내지도, 컴퓨터(정보통신보조기기를 포함한다), <u>전동보장구충전시설</u>
노유자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u>전동보장구충전시설</u>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점자관광안내책자

시 설			
--------	--	--	--

비고

1. 비치용품은 출입구부근, 민원실, 안내실, 매표소 등 장애인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각각 비치하여야 하며, 공중팩스기는 사무용 팩스기로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보청기기”는 보청기, 조청기 또는 강연청취용보조기 등을 말한다.
3. 장애인용 쇼핑카트는 최소 3개 이상을 쇼핑카트 보관장소 등에 비치하고, 장애인용 쇼핑카트가 비치되어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신 설>

<신 설>

장례식장	입식 식 탁, 휴대 용 경사로	
운 동 시 설	수영장	입수용 휠 체어

비고

1. 비치용품은 출입구부근, 민원실, 안내실, 매표소 등 장애인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각각 비치하여야 하며, 공중팩스기는 사무용 팩스기로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보청기기”는 보청기, 조청기 또는 강연청취용보조기 등을 말한다.
3. 장애인용 쇼핑카트는 최소 3개 이상을 쇼핑카트 보관장소 등에 비치하고, 장애인용 쇼핑카트가 비치되어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4. 장례식장(병원, 화장시설 내 장례식장 포함) 빈소의 바닥면에 높이 차이가 있고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휴대용 경사로를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 장례식장란 및 비고 4.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